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가단32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석현

변 론 종 결 2021. 10. 27.

판 결 선 고 2021.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20. 11.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11. 26.

접수 제325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20. 11. 26. 접수

제737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에 대하여 2021. 5. 18.까지의 원리금 합계 43,985,392원(원금 39,696,574원, 이자 및 부대채무 4,288,818원)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C은 2020. 11. 17.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11. 26. 접수 제3254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0. 11.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20. 11. 26. 접수 제7378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 대하여 연체한 신용카드대금 43,985,3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인데, 이 사건 1, 2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니, 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위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채무자인 C이 무자력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제1차 변론기일에 재판장이 원고에게 C의 무자력을 증명하라고 석명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나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C이 위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무자력이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그 원상회복 주장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남

부 동 산 의 표 시

1. 전복 정읍시

답 83 평방미터

2.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아산시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충남 아산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4층 호 84.99 평방미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충남 아산시 대 23150 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23150 분의 50.671

